
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광주과학기술원의 학위과정에 전문석사과정을 추가함(안 제13조 및 제16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